

민간경비 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방안

박 옥 철(경동대학교 경찰경호학부 전임강사)

A Study on Developing Professional Training of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Park, Aok-Cheol

ABSTRACT

Technology development of modern society reduces times, costs and labor costs but demands work forces requiring expert knowledge on technology. Consequently knowledge worker becomes important. Not changing into a specialist acquired expert knowledge, people can't survive in competitive society.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asp the actual condition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and to examine problems. The final goal is to find the way to improve the professionalism of workers in private security industry.

First. Now we must make up for the subject for examination actually and be in a triangular position and complement a professional materials for teaching. At the same time it must strengthen the education using advanced instruments seek to Total Security System. Moreover it is demanded 'institutional supplement of security guard instructors' which means job training for security guard instructor.

Second. On the job training which can deal with a state of emergency through 'security guard training' with a theory and an actual training must be strengthen. Also, most security guards have low understandings and interests

because their ages are from 50's to 60's. Accordingly proper education must be offered to security guard.

Third. Certification system of the private security guards are needed to fix the problems on an indiscreet issue and an abuse of license through deliberation on the security license .

Fourth. Universities must find a new market to minimize the squandering of human resources because of oversupply and reduce the personnel. Also with enhancing the employment rate through specialized education , universities must offer an education which keeps pace with the times for not an entrance strategy but a long-term development.

Effort for education of specialist will produce an improvement in business quality and improved services produce a customer satisfaction. A customer satisfaction will produce a fame of a successful company and positive images in market area. Finally the private industry will be developed by productivity improvement.

I. 서 론

오늘날 각종 범죄는 양적·질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에스원·삼성경제연구소(1996:30) 연구에 의하면 한국의 범죄유형 10대 추세는 지능화·세계화·산업화·강력화·대량화·익명화·광역화/초스피드화/상시화·과실범죄·보편화·반국가/반사회화 범죄의 증대를 들 수 있다. 이에 경찰력 또한 다양한 대응체제를 갖추어 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경찰력만으로 발생하는 모든 범죄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경찰청 자료 '2005년 5대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¹⁾을 보면 5대범죄의 발생건수는 487,847건이며, 범인 검거률은 354,089건으로 72.59%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살인, 강도, 강간, 폭력범죄의 범인 검거률은 각각 96.42%, 77.75%, 87.99%, 91.76%의 비교적 높은 검거률을 나타내고 있으나, 절도범죄의 경우 42.76%의 낮은 범인 검거률을 나타내고 있다. 절도의 경우 살인, 강도, 강간, 폭력범죄에 비해 사건의 규

1) 5대 범죄는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으로 구분하며, 폭력은 형법상의 폭행, 상해, 체포·감금, 협박, 약취, 유인, 공갈, 손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합한 것임. 살인 1,061건(검거 1,023건), 강도 5,172건(검거 4,021건), 강간 7,323건(검거 6,443건), 절도 188,960건(검거 80,785), 폭력 285,331건(검거 261,817건)으로 총 범죄 발생건수는 487,847건이며 범인검거는 354,089건이다.

모나 피해가 미치는 영향 정도가 적은 이유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경찰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업무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OECD 주요국가 경찰인력현황을 보면 한국은 경찰 1인당 담당인구 511명으로 타 국가에 비해 경찰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게 나타나고 있다.²⁾ 이러한 경찰 인력의 부족은 일반인의 경비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Robert D. McCrie(2003:15)의 연구에 의하면 일반인들은 공공의 법집행에 의해 합리적으로 제공되는 것보다 더 많은 경비서비스를 요구하고 필요로 하며 해결책으로 시민들의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조직들로 하여금 민간경비 영역으로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고객의 요청에 의해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화된 민간경비원들의 근무지역 순찰은 대상 시설물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범죄억제와 예방의 효과도 동시에 나타날 것이며, 업체의 경쟁력과 민간경비 산업 전체의 질적 성장을 이룰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범죄의 증가와 경찰력의 부족 그리고 일반시민들의 경비서비스 요구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경비 인력의 투입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민간경비 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방안에 대하여 제안코자 한다.

II. 민간경비 전문인력 양성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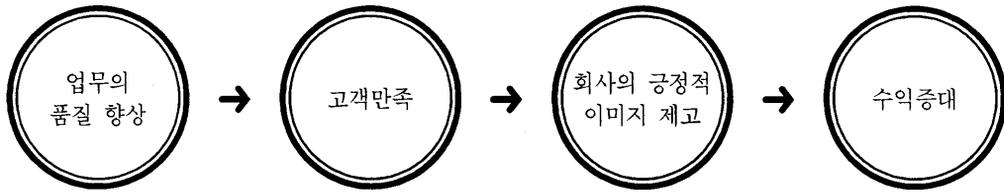
현대사회의 기술 발달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간과 비용 그리고 인건비를 줄이게 되었다. 하지만 반대로 기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인력을 요구하게 되었다. 소위 지식노동자가 필요하게 되었고, 전문지식을 습득한 전문가로 변화하지 않으면 경쟁사회에서 생존하기 힘들어 졌다. 이와 같이 민간경비 산업에서도 질적인 성장을 위해 전문인력을 요구하고 있다. 민간경비 산업의 전문화를 위해 경비업법 제2조(정의)에서 민간경비 산업을 시설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호송경비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로 분류하고 있다. 업무의 분업을 통하여 일부의 업무만 담당함으로써 민간경비 인력의 전문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체의 투자는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2) OECD 주요 국가 경찰 인력현황(괄호안은 경찰1인당 담당인구/통계조사 기준일)

일본 253,644명(500명/06년4월 기준), 프랑스 258,010명(244명/06년1월 기준), 영국(일글랜드, 웨일즈) 141,795명(369명/05년3월 기준), 스페인 10,1000명(398명/05년2월 기준), 독일 280,327명(294명/ 05년3월 기준), 캐나다 81,000명(381명/03년 통계청), 싱가포르 12,139명(359명/04년12월 기준), 미국(뉴욕) 39,110명(232명/03년12월 기준), 홍콩 27,754명(264명/04년12월 기준), 한국 95,350명(511명/06년8월 기준)

자료 : 경찰청 혁신기획과 국정감사 요구자료



〈그림 2-1〉 민간경비업체의 전문인력양성 기대효과

위의 〈그림 2-1〉내용을 살펴보면 민간경비 산업의 전문화를 통하여 업무의 품질향상을 가져올 것이며, 향상된 서비스의 제공은 곧바로 고객의 만족으로 나타날 것이다. 고객의 만족은 회사의 긍정적인 이미지와 민간경비 시장에서 유망한 업체로서의 명성을 가져올 것이며, 이러한 생산성의 증대로 보다 나은 사업성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와 같이 업무의 분업화·전문화는 이루어졌으나 인력의 전문화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하여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Ⅲ. 민간경비 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실태

1. 민간경비 산업의 현황

민간경비 산업의 범위를 규정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며 이익집단마다 민간경비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경비업법에서 분류하고 있는 시설경비, 신변보호, 호송경비, 기계경비, 특수경비의 5가지 업종별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 3-1〉을 보면 민간경비 등록 업체 중 시설경비업이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민간경비 시장의 점유 비율이 큰 만큼 시설경비의 고질적인 열악한 근무환경이나 경비원의 자질 그리고 인력중심의 경비서비스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민간경비 산업의 질적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평가 받을 수 있다.

신변보호업체 수가 단기간에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간단한 허가기준으로 인하여 기존의 경비업체에서 사업의 확장이나 회사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허가받은 경우가 일부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실제 순수한 신변보호업무만을 하는 곳은 등록 현황보다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신변보호업이 성장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각종 범죄와 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일반인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경찰력에 의존하지 못하는 각종 사건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으로 시장은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급속히 성장하고는 있으나 인력수급 방안의 문제점을 해결해할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업체에서 Part-time 형식의 인력수급을 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³⁾ 이러한 문제점들을 시급히 해결해야 신변보호업의 질적인 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표 3-1〉 2002년 이후 연도별 민간경비 업체 등록 현황(건별)

단위 : 개

구분	법인 수	허가업종 현황					
		업종계	시설경비	신변보호	호송경비	기계경비	특수경비
2002년	2,051	2,388	1,963	187	62	150	26
2003년	2,163	2,496	2,031	217	53	159	36
2004년	2,322	2,669	2,192	262	44	140	31
2005년	2,515	2,957	2,401	334	44	138	40
2006. 6월	2,577	3,030	2,460	349	47	135	39

자료 : 경찰청 국정감사요구자료 재구성.

※ 업종계가 법인수보다 많은 이유는 2개 이상의 업종을 허가 받은 법인이 있기 때문이다.

호송경비업체의 수가 해마다 조금씩 감소하는 것은 시장의 포화상태로 인하여 업체들간의 경쟁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체들의 영업허가취소로 볼 수 있다. 앞으로 일본의 경우처럼 핵물질 운반 등의 경우처럼 새로운 시장의 개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계경비업체 수 또한 해마다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이다. 현재 기계경비시장은 S사, C사 그리고 K사가 대부분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여기에 선진외국의 자본투입으로 인하여 지방의 중소기업체들을 인수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수는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시장은 약간의 포화상태에 있으나 일반주택에 대한 경비서비스나 의료분야 및 각종 첨단장비를 이용한 상품들의 개발로 인하여 시장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경비업체 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제정세의 변화가 주요원인이기도 하다. 9. 11 테러 이후 세계는 지금 테러와의 전쟁을 치루고 있다. 국가 경찰력만으로 각종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중요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에는 경찰의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여 무기를 휴대한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국가중요시설물의 안전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아래의 〈표3-2〉는 연도별 경비원 고용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신변보호업의 경비원 고용 증가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003년 대비 300%로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의 증가와 여러 가지 사회문제

3) 일부 사고사례를 보면 중간에서 인력수급을 맡아하던 관리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있다.

로 인하여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수경비원 또한 많이 증가하였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국제정세의 변화로 인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호송경비원과 기계경비원은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시장의 포화상태로 인하여 당분간 증가의 폭이 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민간경비시장에서 시설경비원의 비중은 8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첨단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력중심의 경비서비스에서 인력과 첨단기술의 조화를 이룬 경비서비스를 제공하여 민간경비 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3-2〉 2003년 이후 연도별 경비원 고용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시설경비	신변보호	호송경비	기계경비	특수경비
2003년	104,872	91,218	1,802	2,228	6,609	2,955
2004년	105,697	92,291	2,621	2,510	4,218	4,057
2005년	122,327	105,682	4,284	2,671	4,649	5,041
2006. 6월	126,126	107,035	6,096	2,890	4,886	5,219

자료 : 경찰청 국정감사요구자료

아래의 〈표3-3〉은 사설경비업체 단속 및 처리현황이다.

〈표 3-3〉 사설경비업체 단속 및 처리현황

단위 : 건

구 분		년 도			
		2003	2004	2005	2006. 6월
행정처분	허가취소	59	87	90	44
	영업정지	8	4	3	1
	경고	85	303	154	50
과태료		580	436	304	106

자료 : 경찰청 국정감사요구자료 재구성

허가취소는 2005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06년 6월 기준 44건으로 전년대비 절반수준이다. 하지만 남은 기간을 계산하면 적은 숫자는 아니다. 영업정지는 2006년 현재 1건으로 매우 양호한 편이며, 경고는 2004년 303건으로 대폭 증가하였다가 작년과 올해 대폭 감소중이다. 과태료 건수 또한 2003년 580건에서 현재 106건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전체적으로 단속처리현황을 보면 해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단속처리현황은 경비업법 제24조의 감독 규정에 의하여 연2회 전 경비업체에 현장지도 방문을 실시하여 단속한 결과이다.

아래의 <표3-4>은 경비지도사 자격정지 및 취소 현황이다. 2006년 6월 전체 경비지도사 수는 13,794명이며 이중 21명이 자격정지와 19명이 자격취소가 되었다.

<표3-4> 경비지도사 자격정지 및 취소 현황

2006. 6월

구 분	경비지도사	자격정지	자격취소
현황(명)	13,794	21	19

자료 : 경찰청 국정감사요구자료

2. 전문인력 양성 실태

1) 경비지도사

경비업법 제2조(정의)와 동 시행령 제10조(경비지도사의 구분)를 살펴보면 경비지도사는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경비지도사는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특수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계경비지도사는 기계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비지도사의 직무는 경비업법 제12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첫째, 경비원의 지도·감독·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
- 둘째,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 셋째,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 넷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무이다.

<표 3-5> 경비지도사의 시험과목

구 분	1차시험	2차시험
	선택형	선택형 또는 단답형
일반경비지도사	○법학개론 ○민간경비론	○ 경비업법(청원경찰법을 포함한다) ○ 소방학·범죄학 또는 경호학 중 1과목
기계경비지도사		○ 경비업법(청원경찰법을 포함한다) ○ 기계경비개론 또는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중 1과목

출처 : 경비업법시행령 [일부개정 2004.3.17 대통령령 제18312호]

위의 표 <표 3-5>은 경비지도사의 시험과목이다. 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법학개론과 민간경비론을 시험과목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의 공통과목이다. 일반

경비지도사 2차시험은 선택형과 단답형으로 경비업법은 필수이며 소방학, 범지학, 경호학 중 1과목을 선택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기계경비지도사 2차시험은 일반경비지도사와 같이 경비업법을 필수과목으로 채택하고 기계경비개론,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중 1과목을 선택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아래의 <표3-6>은 경비지도사 교육의 과목 및 시간을 나타내고 있다.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의 교육은 공통교육 28시간과 자격의 종류별 교육 16시간으로 총 44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공통교육의 교과목은 경비원신입교육에 있는 대부분의 교과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격종류별 교육의 교과목은 경비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별 교육에 관련된 교과목으로 편성되어있다.

<표 3-6> 경비지도사 교육의 과목 및 시간

구분(교육시간)	과 목		시 간
공통교육(28시간)	「경비업법」		4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청원경찰법」		3
	테러 대응요령		3
	화재대처법		2
	응급처치법		3
	분사기 사용법		2
	교육기법		2
	예절 및 인권교육		2
	체포·호신술		3
	입교식·평가·수료식		4
자격의 종류별 교육 (16시간)	일반경비지도사	시설경비	2
		호송경비	2
		신변보호	2
		특수경비	2
		기계경비개론	3
		일반경비현장실습	5
	기계경비지도사	기계경비운용관리	4
		기계경비기획및설계	4
		인력경비개론	3
		기계경비현장실습	5
계			44

출처 : 경비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9.7 행정자치부령 제345호]

아래의 <표 3-7>은 회차별 경비지도사 합격자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1997년 1회부터 2005년 7회까지 일반경비지도사 12,532명, 기계경비지도사 1,258명, 총 13,790명이 합격하였다. 1-2회때까지는 2년마다 한번씩 시험을 치루었으며, 약 1만여명을 합격시켰다. 이와

같은 상황은 당시 경비지도사 제도를 실시함에 있어 인력부족 현상을 줄임과 동시에 민간경비 산업에 빠르게 적용시키기 위함이었다. 이후 3회차 부터는 자격증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600명씩 합격시켰다. 합격인원이 600명을 넘는 것은 1차 시험의 경우 절대평가제로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자를 1차 합격시킨 다음 2차 시험에서 60점 이상 합격한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이 초과되는 경우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표 3-7〉 회차별 경비지도사 합격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회 수	시행일자	응시인원			합격인원		
		계	일반	기계	계	일반	기계
제1회	97.2.23	13,004	12,317	687	2,398	2,161	237
제2회	99.10.31	18,474	17,061	1,413	7,875	7,205	670
제3회	01.12.9	10,462	9,385	1,077	635	554	81
제4회	02.11.10	5,667	5,051	616	796	734	62
제5회	03.11.9	5,938	5,435	503	769	683	86
제6회	04.11.21	5,141	4,795	346	647	586	61
제7회	05.11.13	6,891	6,491	400	670	609	61
총 계		65,577	6,535	5,402	13,790	12,532	1,258

자료 : 경찰청 국정감사요구자료 재구성

※ 2001년 제3회 시험부터 600명 선발

경비지도사 시험 응시자를 보면 총 65,577명이 원서접수하여 비교적 많은 인원이 시험에 응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실업 중 취업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경찰공무원 시험의 면접시험시 2%의 가산점 부여로 인하여 지원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래의 〈표3-8〉은 지역별 경비업체와 경비지도사 현황이다. 상대적으로 업체수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서울지역이 가장 많은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대도시 중심으로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13,790명의 경비지도사 중 3,226명이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약 24%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경찰청 국정감사요구자료(2006)에 의하면 경비지도사는 경비업체의 경비원을 지도·교육·감독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인으로 민간경비의 성장추세와 더불어 경비업 분야에 종사할 자의 전문성이 점점 요구되고 있어 향후 전문직종으로 부상 할 분야라고 나와 있다. 이것은 경찰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향후 경비지도사 제도를 발전시킬 것을 조심스럽게 예상한다.

〈표 3-8〉 지역별 경비업체와 경비지도사 현황

2005.12.31 현재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경비업체	2,515	1,102	215	148	90	30	312	37	62	155	49	140	63	96	16
경비지도사	3,226	1,685	231	150	110	35	386	39	58	168	49	142	69	88	16

자료 : 경찰청 생활안전과 자료 재구성

2) 경비원

경비업법 제2조(정의)에 경비원이라 함은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업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업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특수경비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특수경비원은 무기를 휴대할 수 있으며, 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 등을 말한다.

다음의 〈표 3-8〉은 경비원 연령분포 현황이다.

〈표 3-8〉 경비원 연령분포 현황

2005.12.31 현재

구분	계	20세 이하	21 -25	26 -30	31 -35	36 -40	41 -45	46 -50	51 -55	56 -60	61 -65	66 -70	71세 이상
연령 분포	122,327	232	13,211	18,153	6,226	3,645	3,058	5,407	7,267	12,955	21,102	22,459	8,612
구성비 (%)	100	0.19	10.80	14.84	5.09	2.98	2.50	4.42	5.94	10.59	17.25	18.36	7.04

자료 : 경찰청 생활안전과 제공

전체 122,327명 중 51-70세가 52.14%로 경비원의 절반이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71세 이상의 비율도 7.0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앞서도 언급했듯이 시설경비업의 고질적인 인력수급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상대적으로 젊은층인 21-30세의 비율을 보면 25.64%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율은 시설경비를 제외한 경비업무에서 젊은층의 분포가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다. 전체 경비원의 평균연령은 49.6세로 나타난다. 민간경비원이 하나의 전문직종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것이다.

다음의 〈표 3-9〉은 지역별 경비업체와 경비원 현황이다. 전체 경비원 122,327명 중 56.1%가 서울, 경기, 인천 순으로 수도권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다음으로 부산, 충남, 경남 순으로 대도시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지역의 경제개발 정도와 범죄발생건수,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 정도에 따라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수도권지역과 대도시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표 3-9〉 지역별 경비업체와 경비원 현황

2005.12.31 현재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경비업체	2,515	1,102	215	148	90	30	312	37	62	155	49	140	63	96	16
경비원	122,327	32,242	11,494	5,522	8,763	3,082	27,688	2,608	2,562	8,358	2,514	5,901	4,924	5,872	819

자료 : 경찰청 생활안전과 자료 재구성

〈표 3-10〉 일반경비원 신입교육의 과목 및 시간(제12조제1항관련)

구분(교육시간)	과 목	시 간
이론교육 (7시간)	「경비업법」·「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청원경찰법」 범죄예방론(신고 및 순찰요령을 포함한다)	4
	테러 대응요령	3
실무교육 (18시간)	화재대처법	2
	응급처치법	3
	분사기 사용법	2
	예절 및 인권교육	2
	체포·호신술	3
	질문·검색요령(관찰·기록기법을 포함한다)	3
기타(3시간)	입교식·평가·수료식	3
계		28

출처 : 경비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9.7 행정자치부령 제345호]

위의 〈표 3-10〉 일반경비원 신입교육의 과목 및 시간을 나타내고 있다. 교육과목은 이론교육 7시간, 실무교육 18시간, 기타 3시간으로 구분되고 있다. 기존의 신입교육은 15시간이었으나, 교육기관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28시간 10과목으로 개편하였다.

3) 민간자격증

다음의 〈표 3-12〉는 민간경호·경비관련 자격증 현황이다.⁴⁾ 자격증은 크게 신변보호업관련 자격증, 기계경비업관련 자격증, 탐정관련 자격증으로 구분된다. 자격증 명칭은 신변보호업관련 자격증은 경호관리사 1·2급, 신변보호사, 경호원 1·2·3급, 경호사, 특수경호사, 특수경호원, 신변보호사 2·3급이 있으며, 기계경비업관련 자격증 명칭은 무인경비관리사가 있다. 탐정관련 자격증은 PIA사실정보탐경사가 있다. 시험과목을 살펴보면 신변보호업관련 자격증의 시험과목은 경호학, 경비업법, 범죄학, 경호실무 등 총 28개 과목이 있으며, 기계경비업관련 자격증은 기계경비시스템, 경비업법, 방범기기개론, 무인경비실무로 총 4과목이 있고, 탐정관련 자격증은 PIA

4) 자료는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수집하였고, 민간경호·경비관련 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관은 몇군데 더 있으나 4곳으로 한정하였다.

개론, PIA경찰론, PIA작용론, PIA조사론으로 총 4과목이 있다. 응시자격은 자격증시행기관마다 제각각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 자격증은 신변보호업에 관련된 자격증이 많이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경호라는 이미지가 일반인들에게 긍정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표 3-12〉 민간경호·경비관련 자격증 현황

구분		시험과목		응시자격	시행기관
		1차 시험	2차 시험		
경호 관리사	1급	경호학 경비업법 형법	경호실무 경호논문 (계획서)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가. 만 18세 미만인 자. *나. 금지산 자. 한정치산 자 *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검정시험 후 결격 사유 조회 시 상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합격 여부에 관계없이 불합격처리함.	한국경호 경비협회
	2급	경호학 경비업법 형법	경호관리실무		
신변보호사		경호실무	실기면접	*무술단증소지자	
무인경비 관리사		기계경비시스템 경비업법 방법기기개론	무인경비실무	*특별한 응시자격 기준이 없음.	
경호원 (1차 필기, 2차 실기)	1급	경호일반 경호실무 시설경비 테러 및 범죄 경호의전 및 예절	경호의전 및 예절 경호 보디랭귀지 구급법 특기술	*2급 취득 후 3년경과, 4년제 대학졸업, 30세 이상, 무술 4단 이상,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분회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고급과정 16시간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해 응시 가능함. (단, 2급 취득 후 초급대학 졸업자는 4년, 고등학교 졸업자는 5년의 경과규정을 따로 둔다.)	국제경호 협회
	2급	경호관계법 경호 보디랭귀지 경호장비 및 폭발물 구급법 법률상식 경호호신법	경호실무 출입통제 및 관리 경호상황에서 경호호신법	*3급 취득 후 2년경과, 4년제 대학졸업, 25세 이상, 무술 3단 이상,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분회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중급과정 16시간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해 응시 가능함. (단, 3급 취득 후 초급대학 졸업자는 3년, 고등학교 졸업자는 4년의 경과규정을 따로 둔다.)	
	3급			*고졸이상, 18세 이상, 신장 남 170cm이상, 여 160cm이상,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로 국제경호협회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보안경호경비 전문과정을 최소 240시간 이상 이수한 자로 한다.	
경호사 (필기/실기)		보안 경호 경비전문교육 훈련 지도론	보안 경호 경비교수법	*1급 취득자 또는 경호관련 전임 석사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 본 협회장의 추천받은 자로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	
PIA시설정보 탐경사		PIA개론 PIA경찰론 PIA작용론	PIA경찰법 PIA조사론	*시험일이 속한 연도 18세 이상인 자.	
특수경호사		민간경비론 범죄심리학	경비업법 및 경호관계법 경호학 및 경호실무	*시설경호원자격증을 취득, 경호안전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경찰공무원 5년이상 재직 한 자. *부서관 이상의 군인으로 5년 이상 복무한 자. *대통령 경호실법에 의한 경호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재직 한 자. *전문대학의 경호학과 무도 체육학과 경찰행정학과 졸업자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며 타과과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2년 이상 경호 안전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4년제 대학의 경호학과 경찰행정학과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경호, 안전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경비업법에 의해 일반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자. *자격 기본법에 의거 PIA(시설정보탐경사)자격이 있는 자.	한국특수 행정장 협회
특수경호원					
신변보 호사 (이론/ 실기)	2급	경호학 경찰학 경비업법 범죄학	경호무도 체포, 호신술	*4년제 대학교 시큐리티 관련 학과, 경찰 관련학과 재학 또는 재학한 적이 있는 자. *3급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자	(사)한국 경비협회
	3급	민간경비론 법학개론 중 택 2		*전문대학 시큐리티 관련 학과, 경찰 관련학과 재학 또는 재학한 적이 있는 자.	

출처 : 각 시행기관 인터넷 사이트 자료 재구성

4) 국내 경호·경비관련 대학

1980년 삼성그룹의 기계경비업에 대한 투자⁵⁾를 계기로 민간경비산업은 급격한 성장을 하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민간경비산업은 성장하였고, 이에 따르는 전문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 1996년 Y대 경호학과를 시작으로 현재 60여개 대학에서 경호·경비관련 학과가 신설되었다. 학과(부)의 명칭을 살펴보면 경호학과, 경호비서학과, 경찰경호학부(경호비서학전공), 경호행정과, 경찰경호행정과, 안전경호학과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공배완(2005:11)의 연구에 의하면 국내 대학의 경호·경비관련 학과(부) 교과목 중 체육 및 보건분야 15과목, 레저스포츠 분야 22과목, 경호·경비학 분야 16과목, 경호·경비실무 분야 14과목, 무도 및 무기분야 11과목, 경찰 및 교통 분야 14과목, 소방 및 안전교육 분야 14과목, 법학실무 분야 14과목, 인문사회과학 분야 27과목, 사무정보 분야 10과목, 비서·의전 분야 7과목, 예절·윤리 분야 5과목, 응급구조 분야 5과목, 어학 분야 4과목, 기타 2과목으로 총 15개분야 180과목의 교과목이 설치되고 있다. 이중 5개교 이상의 대학에서 설치하고 있는 교과목 수는 22과목이다. 동 연구자료에 의하면 국내 경호·경비관련 학과(부)의 재직중인 교수님들의 전공은 체육학 78.5%로 가장 많았고, 그 외 전공자는 21.5%였다. 그 외 교수님들의 전공은 공학, 법학, 행정학 등으로 나타났다.

IV. 국내 민간경비 전문인력 양성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경비지도사 제도의 보완

경비지도사 제도는 1995년 12월 30일 제5차 경비업법 개정에 의해 신설된 제도로서 일본의 자격제도를 기본 바탕으로 국내 경비업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경비업계의 발전을 위해 만든 유일하게 공신력을 가진 자격증이다. 하지만 경비지도사 제도는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시험과목의 현실성과 난이도에 대한 문제이다. 현재 일반경비지도사 1차 시험과목은 법학개론과 민간경비론이며, 2차 시험과목은 경비업법과 소방학, 범죄학, 경호학 중 1과목을 선택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법학개론의 경우 경비지도사의 직무와 현실성에서 떨어진다든 평가를 받고 있고,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과목의 편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2차 시

5) 1980년 7월 3일 삼성그룹은 한국경비보장과 지분인수를 통한 경영참여 계약을 맺음과 동시에 일본 최대의 경비회사인 일본 세콤(SECOM)과 합작투자 계약을 체결하였다. 합작회사의 지분비율은 삼성 40%, 일본 세콤 40%, 한국경비보장 20%의 형태였다. 김성연(2004:132) 일본세콤의 지분은 24.66%이다. (금융감독위원회, 에스원 분기보고서, 2004년 9월, <http://dart.fss.or.kr/>)

험과목 또한 신변보호업 위주의 교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다. 경비업법에서 일반경비지도사는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특수경비업에 종사하는 경비원들을 관리·감독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변보호 위주의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편중된 시험에서 벗어나 경비업무에 필요한 보다 포괄적인 교과목 편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차 시험의 경우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의 공통과목으로 시험을 실시하고 있고, 2차 시험의 경우 각각의 경비지도사에 대한 전문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다. 하지만 2차 시험과목 중 경비업법은 양쪽에 공통으로 시험과목으로 선택하고 있다. 전문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과목에 경비업법이 양쪽에 공통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굳이 경비업법을 2차 시험의 과목으로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며 1차 시험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법학개론을 제외시키고 경비업법을 1차 시험과목으로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2차 시험과목을 좀 더 현실성 있게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2차 시험과목 중 소방학, 범죄학, 경호학을 선택하는 것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시험 응시자들의 대부분이 경호학을 선호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경호학이 소방학이나 범죄학보다 상대적으로 문제의 난이도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범죄학 과목의 경우 범죄학 전반에 대한 내용보다는 민간경비의 특수성에 맞게 범죄예방론 부문만을 다루어 난이도를 다른 과목과 비슷하게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이것은 시험을 응시하는 응시자에게도 선택의 폭을 넓히게 되어 한 과목에 편중하는 현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문의 정립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학문의 정립이 되지 않아 어느 정도 보편화된 교과목을 선택하기에는 그 폭이 좁은 것이 현실이다. 학문의 정립과 전문교재의 편찬이 이루어져야 경비지도사 제도의 문제점이 해결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 많은 학자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는 시대흐름에 맞는 교육의 개발이 필요하다.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민간경비의 환경 또한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더욱 더 가속화 될 것이다. 예전의 인력위주의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던 시대에서 기계경비의 도입으로 인하여 첨단장비의 활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하지만 경비지도사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첨단장비를 이용한 교육과목은 거의 없으며, 이론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의 경비서비스는 Total Security System을 요구하고 있다. 경비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설경비 또한 마찬가지로 예전의 인력위주의 경비서비스에서 점점 첨단 기기를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인 경비서비스를 요구하는 추세이다. 이에 적절한 첨단장비를 활용한 교육과 시설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경비지도사의 직무교육 실시에 관한 문제이다. 현재 교육과정은 총 44시간을 이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다. 일반경비원들을 교육·관리·감독하는 경비지도사의 교육과정

으로써 시간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일반경비원 신입교육과정 28시간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으며, 경비지도사 대부분이 실무에 관한 교육이 부족한 실정으로 비추어 본다면 실질적인 경비원 교육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비지도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이 매년 2회 정도 실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직무교육은 경비지도사와 경비원에게 맞는 현실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직무교육은 경비지도사의 자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경비원의 자질 또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상과 같은 경비지도사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경비지도사의 자질 및 능력향상을 통하여 경비원의 자질향상과 경찰과의 상호협력에 있어서도 원활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동안 경찰과의 상호협력관계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은 문제제기를 하였다. 하지만 민간경비업 종사자의 자질과 능력 저하로 인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경비지도사 제도의 보완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2. 현실에 맞는 경비원교육

일반경비원의 교육은 신입교육과 직무교육으로 구분된다. 신입교육은 경비협회에서 경비업체에게 재위탁하여 자체교육을 실시하였으나 교육내용의 부실화로 인해 경찰청에서 지정한 일반경비원 신입교육 기관 또는 단체 47개소⁶⁾에서 교육계획에 따라 28시간을 실시하며, 기존의 교육과목에 범죄예방론, 테러 대응요령, 응급처치법, 분사기사용법, 인권 및 예절교육을 추가하였다. 교육은 근무배치 후 1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이수하여야 한다. 직무교육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매달 4시간을 받아야 한다. 반면 특수경비원은 총 88시간으로 일반경비원보다 많은 교육시간과 세분화된 교과과정을 가지고 있으며, 매월 6시간의 직무교육을 받게 되어있다. 하지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일반경비원 신입교육에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이론중심의 교육운영이다. 교육과목 중 화재대처법, 응급처치법, 분사기 사용법, 예절 및 인권교육, 체포 및 호신술 교과목은 실기 및 실습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

6) 2006년 경찰청 국정감사요구자료에 의하면 2005년 9월 9일 민간경비원 교육기관 확대개편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동년동월 12일 민간경비 교육기관 지정관련 신청접수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 동년 10월 11일까지 접수하였다. 동국대 등 대학 52개소, 경비협회 등 법인 41개소 총 93개 기관에서 신청하여 동년 11월 14일 민간경비 교육기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일반경비원 교육기관 47개소, 특수경비원 교육기관 12개소, 경비지도사 교육기관 7개소를 선정하였다. 동년 12월 14일 민간경비 교육기관 담당자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교육과정별 06년도 민간경비 교육일정 등을 확정하고, 학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논의 및 결정하여 2006년 2월 5일부터 개편된 시스템에 의하여 교육기관을 전격 운영하고 있다.

육기관에서 이론교육으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기에 시간이 부족하지만, 실질적인 근무를 하는 경비원들이 비상사태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습을 하여 숙련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과정의 비현실화이다. 신입교육의 경우 교육대상자 대부분이 시설경비에 종사하는 경비원들이며, 연령은 50-6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들에게 28시간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교육생들이 수업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고, 일반경비원 신입교육에 대한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어 형식적인 교육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연령에 맞는 교육방법과 교과목 편성에 대한 논의가 다시 한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업종별 교육의 부재이다. 교육대상자가 시설경비에 편중된다 하더라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업에 종사하는 교육대상자도 있으므로 업종별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본의 경우 경비원 신입교육을 기본교육 15시간, 업무별 교육 15시간으로 분류하여 경비원 신입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비업의 기반 확립과 경호원의 자질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업무별로 요구하는 직무능력이 다르므로 기본교육만으로 실무에 활용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일반경비원 신입교육을 기본교육과 업무별 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넷째, 직무교육의 형식화이다. 현재 일반경비원은 직무교육을 월 4시간 받게 되어있다. 하지만 맞고대 형식의 근무형태로 인한 경비원의 피로누적, 교육장소의 미비, 형식적인 관리·감독 등으로 인하여 직무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비원의 자질 향상과 질적인 경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반경비원 직무교육을 매월 4시간에서 분기별 교육으로 변경하여 경비협회나 경찰청 지정교육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관리·감독 또한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본다.

3. 공신력을 갖춘 자격증 제도

1980년 이후 민간경비 산업에 대한 투자는 1990년대에 들어서부터 현재까지 급격한 양적성장을 보였다. 1992년 420개의 경비업체와 31,341명의 경비원 수가 2006년 6월 기준으로 2577개의 경비업체와 126,126명의 경비원 수를 보면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급격한 양적성장은 경비원의 자질, 경비서비스 부족, 경비업의 이미지 저하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다. 이에 따라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사설단체를 중심으로 교육훈련과 개별적 시험을 통하여 자격증을 발부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나 공신력을 갖춘 교육기관에서의 전문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발급된 자격증이 없어 업체간의 이해관계가 부족한 실정이며, 자격증 활용여부도 불투명 하다고 볼 수 있다. 앞장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무분별한 자격명칭과 시험과목, 한 가지 업종에 대한 자격증 편중, 여러 단체의 자격증 시험 및 발급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정부기관인 경찰청 주최의 산·학·관 공청회를 통한 민간경비 자격증에 대한 심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자격증의 무분별한 발급과 남용으로 인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공신력을 갖춘 하나의 전문화된 자격증 발급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경찰과의 상호협력체제 구축과 민간경비 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으로써 시험과목, 자격증 명칭 및 구분, 응시자격, 활용방안, 취득자에 대한 혜택 등에 대하여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경찰 또한 범죄예방적 차원에서 민간경비를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이해하고, 이들의 질적인 수준을 높여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범죄예방 및 증거자료 수집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10년간 경찰인력의 변화와 경제침체, 초고령화 사회, 출산률 저하 등의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당분간 경찰인력의 급격한 증가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또한 이러한 사회적 문제와 증가하는 범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경찰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Robert D. McCrie(2003:16)의 연구 자료에 미국에서는 이미 민간경비를 가치 있는 추가적인 정보의 근원으로 여기고 있고, 민간경비는 법집행의 성과를 개선하고 있다고 본다. 특히 9.11테러 이후 민간경비는 자국 경비에 있어 더욱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었고, 공경비와 민간경비간 상호작용의 모든 수준에 있어서 두 영역간의 관계는 함께 계획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민간자원의 이용을 제공함으로써 개선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민간경비를 공공의 범죄예방을 위해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신력을 갖춘 자격증을 통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4. 시대흐름에 맞는 대학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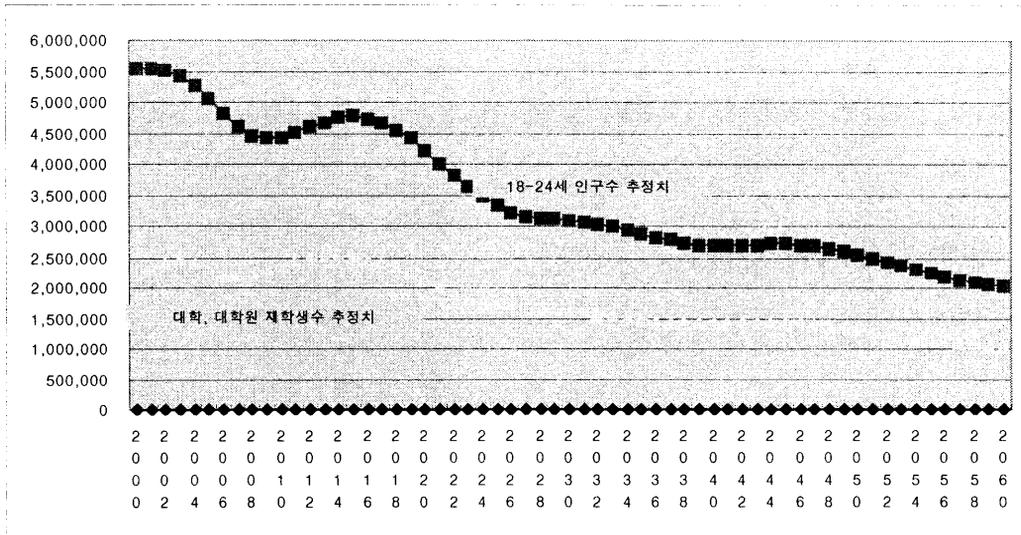
대학교육에 대한 문제점은 몇몇 학자들의 선행연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공배완(2005)은 각각의 교육과정 운용으로 인하여 학문적 정착의 미흡을 제시하였고, 서진석(2006)은 다양한 전공을 가진 교수들로 인해 교과과정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경호·경비관련 학문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현재 전국 60여개 대학의 학과(부)에서 민간경비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서진석(2006:17)의 연구에 의하면 매년 2500명에서 3000명의 졸업생이 배출될 것으로 보이며, 업계의 사정에 비하면 이미 포화상태라 할 수 있다고 한다.⁷⁾ 물론 졸업생 전체가 전공을 살려 취업할 수는 없으나 시장의 규모에 맞는 인력공급과 대책이 필요한 시기이다. 대학의 교과과정을 살펴보아도 5가지 업종 중 신변보호업에 편중되어 있다. 전체 민간경비 시장의 4.8% 밖에 되지 않는 신변보호업에 집중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것은 앞으로 청년실

7) 2006년 6월 기준 민간경비 시장의 경비원 고용현황은 시설경비 107,035명, 신변보호 6,096명, 호송경비 2,890명 기계경비 4,886명, 특수경비 5,219명으로 나타난다.

업에 대한 사회적 문제 또 한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민간경비 시장의 수요에 맞는 공급이 절실한 때이며, 과잉공급으로 인한 인력의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시장의 개척과 정원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학의 환경변화 또한 전문인력 양성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다음 <그림 4-1>은 대학, 대학원 재학생 수 추정치이다.⁸⁾ 이 영(2006:6)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먼저 고령화에 따라 대학(대학원 포함) 재학생수가 현재의 240만명에서 향후 10여년간은 소폭 감소 후 증가하나 그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 2060년에는 100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좀더 구체적인 추정치를 살펴보면, 학생수는 2007년까지는 다소 감소하여 220만명 가량을 나타내고, 이후 2014년까지는 다소 상승하여 250만 가량을 나타낸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어 2020년경 200만명으로, 2035년경 150만명으로, 2060년경 100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중기적으로 2020년까지는 240만명에서 200만명으로의 20%가량의 변화가 있을 것이며, 장기적으로 50년 동안 대학생의 수가 절반이하로 줄어 들 것을 의미한다.



출처: 이 영(2006). 고령화와 고등교육의 장기 여건과 재정수요 추정. 경동대학교 workshop
 자료: 6-7. ※ 오차범위 ±5%

<그림 4-1> 대학, 대학원 재학생 수 추정치

8) 추정치는 대학진학률이 85%, 대학생의 10%가 대학원에 진학한다는 가정하에 얻어진 것이다. 향후 대학진학률이 85%이상으로 증가하고, 대학원 교육이 보편화될 경우 추정치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대학환경 변화의 물결은 현재 국내 60여개 대학 경호·경비관련 학과(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학의 재학생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대학지원자 또한 감소한다는 결론이며, 현재 수도권 위주의 몇몇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에서는 몇 년 전부터 신입생모집에 애로사항을 나타내고 있고, 자질과 능력이 되지 않는 학생들을 아무런 여과과정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현재 대학의 실정이다.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될 대학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인력수급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꾸준히 나타날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급급하여 인력수급에 대한 입시전략에서 탈피하여 장기적 발전을 위해 전문적인 교육을 통한 취업률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V. 결 론

1980년대 기계경비의 도입이후 민간경비 산업은 급격히 성장하였다. 2001년 이전에는 경찰관 수가 더 많았으나 민간경비산업의 발전으로 민간경비산업 종사자 수가 경찰관 수를 상회하기 시작했으며, 업체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민간경비 산업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비약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경비 산업의 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민간경비 산업의 양적인 면과 더불어 질적인 면에서도 향상시켜야할 필요성이 절실한 시기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민간경비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검토하여 민간경비산업의 종사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재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현실성 있게 보완하고 학자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학문의 정립과 전문교재의 편찬이 요구된다. 또한 Total Security System을 추구할 수 있는 첨단장비를 활용한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비지도사의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경비지도사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경비원 교육'으로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현장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경비원의 주 연령대가 50대에서 60대로 수업의 이해도와 관심도가 낮으므로 눈높이에 맞는 교육방법과 교과목 편성에 대한 논의가 다시 한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경비 업종별 세분화된 교육과 현실에 맞는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셋째, 정부기관인 경찰청 주최의 산·학·관 공청회를 통한 민간경비 자격증에 대한 심의를 거쳐 자격증의 무분별한 발급과 남용으로 인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공신력을 갖춘 하나의 전문화된 자격증' 발급이 우선시 되어야한다.

넷째, 대학에서는 과잉공급으로 인한 인력의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시장의 개척과 정원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현실에 급급하여 인력수급에 대한 입시전략에서 탈피하여 장기적 발전을 위해 전문적인 교육을 통한 취업을 향상에 중점을 두어 '시대흐름에 맞는 대학에서의 교육'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노력은 업무의 품질향상을 가져올 것이며, 향상된 서비스의 제공은 곧바로 고객의 만족으로 나타날 것이다. 고객의 만족은 회사의 긍정적인 이미지와 민간경비 시장에서 유망한 업체로서의 명성을 가져올 것이며, 이러한 생산성의 증대로 보다 나은 사업성과로 민간경비 산업은 발전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공배완(2005). “민간경호·경비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문교육 및 인증제도의 필요성 제고”, 『경호경비연구』, 1-25.
2. ____ (2006). “민간경비원의 자격인증제도에 관한 고찰”, 『경남대학교 법정대학 세미나』, 31-48.
3. 김성언(2004). “민간경비의 성장과 함의”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4. 서진석(2006). “한국 민간경비산업의 전망과 전문인력 수급 방안”, 『시큐리티 산학진흥 세미나 발표집』, 6-23.
5. 이 영(2006). “고령화와 고등교육의 장기 여건과 재정수요 추정”, 『경동대학교 workshop』, 1-19.
6. 장영철(2000). “인적자원개발 사례연구 : 영국과 싱가포르의 인적자원개발 인증제를 중심으로”, 『인적자원개발연구』, 1-41.
7. 최응렬(2006). “일반경비원 신입교육의 실태와 발전방안”, 『경남대학교 법정대학 세미나』, 7-30.
8. 삼성경제연구소(1996). “소득 1만불 시대 한국사회의 변화와 대응 -사회발전에 따른 범죄현상을 중심으로-”.
9. Robert D. McCrie(2003). The New York Miracle : The Decline in Crime in New York City and How Cooperation Between Police and Private Security Helped.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40주년 국제세미나』, 3-33.

논문접수일 : 2006년 9월 29일

심사의뢰일 : 2006년 10월 10일

심사완료일 : 2006년 11월 25일